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12. 18.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2년 11월 9일

나. 제 출 자 : 신흥식 의원외 9인

다. 회부일자 : 2012년 11월 19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72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위원회(2012. 12. 1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신흥식 의원)

가. 제안이유

- 우리구의 규제시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하고 구의원 1명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함.
(안 제3조제1항부터 제3조제3항까지)
-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 기 영)

- 이 개정 조례안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영등포구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의원발의된 조례안 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 위원회 구성에 위원장 2명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1명을 포함하여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명시하였고,
 - 안 제8조에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함.
-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규제개혁에 관한 주민 의견수렴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로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법체제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짐.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 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홍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
----------	-----

발의연월일 : 2012년 11월 9 일

발 의 자 : 신홍식의원 외 9 명

1. 제안이유

우리구의 규제시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하고 구의원 1명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을 명시 함.(안 제3조제1항부터 제3조제3항까지)
- 나.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규제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에 관”을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설치 및 기능)”을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2조제5호 중 “규제개혁 실태”를 “규제개혁실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2인을 포함한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를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구청장과”를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으로, “중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
촉하는 자가 된다”를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
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
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
나 있었던 사람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
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1명
6. 그 밖에 규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장이 된다.

제4조제1항 중 “직무”를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 없”을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수당)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 제목 “(수당)”을 “(규제개혁신고센터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구청장은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규제개혁신고센터에 접수된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u>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제개혁위 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등포구 의 규제시책을 심의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 해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제개혁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 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 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제개혁위원회를 설 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 -----.
제2조(설치 및 기능) 행정규제 개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 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 특별시영등포구에 규제개혁위 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 ·의결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 검 ·평가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 -----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조	6. 그 밖에 ----- -----

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

--.

②-----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
-----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④제3항의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
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
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
던 사람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1명

6. 그 밖에 규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
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장
이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 업무-----.

②-----
-----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
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8조(수당) 위원회의 위원과 위
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
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
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
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
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
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 설〉

-----.
제7조(수당) 위원회의 위원과 위
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
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
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
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
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
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규제개혁신고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소
속기관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규제개혁신고센터
에 접수된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위원회에 송부하여
야 한다.